

임시허가증

임시허가번호	2024-9호	임시허가 연월일	2024년 6월 28일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코엑터스 주식회사	592-86-00949(110111-6724573)	
	주소		
	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 13길 8, 오복타워 705호		
대표자	송민표		
명칭	임시허가 대상		
기술·서비스	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		
명칭 및 주요 내용	주요내용 ○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(이하 구직자)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(최대 3개월 유효),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·모니터링하는 서비스		
유효기간	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○ 코엑터스가 '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'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 부여 ○ (조건) 다음의 '부가조건'을 준수할 것		
임시허가조건	< 부가 조건 >		
	① 급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(이하 사업자)는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공단)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해당 임시택시운전자격 종사자(이하 종사자)를 등록하여야 하며, 공단의 범죄경력 조회로 종사자의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운행 불가		
	② 임시택시운전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에 한하여 부여하며, 추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함		
	③ 종사자의 규모는 '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' 지정조건 내 실증범위 한도 내에서 운영할 것		
	④ 사업자는 모빌리티 실증특례(국토부 소관, 택시 및 플랫폼 임시운전자격 부여)에 참여한 종사자를 중복으로 채용할 수 없음		
	⑤ 사업자는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처리한 경우, 해당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자 명단을 공단에 통지할 것		
	⑥ 사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하며, 유효기간(3개월) 만료, 범죄경력 확인, 운전면허 취소·정지 처분 등으로 자격이 없어진 경우 해당 종사자를 운전업무에서 즉시 배제할 것		
	⑦ 사업자는 종사자를 위한 기초교육 방안(미팅기 사용법, 기초 서비스 교육 등)을 마련하고 교육하여야 하며,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		
⑧ 사업자는 종사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)이 발급하는 임시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게 할 것	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용 기술·서비스 임시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2024년 6월 28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